

주주 여러분께

에스와이패널(주) 제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고 (일반공모)

상법 제516조의2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 2019년 1월 3일 및 2019년 1월 11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일반공모 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발행회사"의 상호 : 에스와이패널 주식회사
2. 사채의 명칭 : 에스와이패널 주식회사 제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본 사채"라 한다)
3. 사채의 종류 :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2)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3)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이백오십억원(₩ 25,000,000,000)
5.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권면금액의 100%(할인율 0.0%)로 한다.
6. 사채발행가액의 총액 : 금 이백오십억원(₩ 25,000,000,000)
7.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 "본 사채"의 경우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 필증으로 같음한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발행되며, 권종을 1주인수권, 5주인수권, 10주인수권, 50주인수권, 100주인수권, 500주인수권, 1,000주인수권 및 10,000주인수권의 8종으로 한다.
8. 사채의 이율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권면총액의 연 2.0%(이하 "표면이율"이라 한다)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3개월 복리 연 4.0%로 한다.
9.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1월 31일에 원금의 106.3413%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가.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금액 :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 일전	30 일전		
1 차	2020-06-01	2020-07-01	2020-07-31	103.0760%
2 차	2020-09-01	2020-10-05	2020-10-31	103.6068%
3 차	2020-12-02	2020-01-04	2021-01-31	104.1428%
4 차	2021-03-01	2021-03-31	2021-04-30	104.6843%
5 차	2021-06-01	2021-07-01	2021-07-31	105.2311%
6 차	2021-09-01	2021-10-01	2021-10-31	105.7834%

다. 청구장소 : 에스와이패널 주식회사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라.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마.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동수원기업금융지점

바. 지급일 :

2020년 07월 31일, 2020년 10월 31일, 2021년 01월 31일,
2021년 04월 30일, 2021년 07월 31일, 2021년 10월 31일

사. 사채의 원금잔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항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19년 04월 30일, 2019년 07월 31일, 2019년 10월 31일, 2020년 01월 31일,
2020년 04월 30일, 2020년 07월 31일, 2020년 10월 31일, 2021년 01월 31일,
2021년 04월 30일, 2021년 07월 31일, 2021년 10월 31일, 2022년 01월 31일

11. 지급대행자 및 지급사무처리장소 : 중소기업은행 동수원기업금융지점 및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12. 연체이율 : "발행회사"가 본 조 제9항 또는 제10항의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영업일을 말한다)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조 제8항의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조 제8항의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다.

13. 발행방식 : "본 사채"는 공모에 의해 발행하며,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한다.

14. 사채의 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15. 사채관리회사 : DB금융투자 주식회사

16.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 운영자금

17. 청약기간 : 2019년 01월 28일 ~ 2019년 01월 29일 (2영업일간)

18. 납입기일 : 2019년 01월 31일

19. 사채의 발행일 : 2019년 01월 31일

20. 신주인수권과 관련된 사항

1) 행사가액(예정) : 5,725원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제5-23조 및 제5-24조에 따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최초 이사회결의일(2019년 01월 03일)의 전일(2019년 01월 02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을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019년 1월 23일 거래종료 후 확정 예정)

2) 행사비율

가.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합니다.

나.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습니다.

다.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합계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라.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3) 행사가액의 조정

(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합니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합니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x $\{[A+(B \times 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에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합니다. 본호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소지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합니다.

(다) 단, 위 (나)의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함)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라) 위 (가), (나)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19년 4월 30일, 2019년 7월 31일, 2019년 10월 31일, 2020년 1월 31일, 2020년 4월 30일, 2020년 7월 31일, 2020년 10월 31일, 2021년 1월 31일, 2021년 4월 30일, 2021년 7월 31일, 2021년 10월 31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단, 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70% 이상으로 합니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사) 본 항에 의한 행사가격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조정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4)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본 사채"의 발행일(2019년 1월 31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9년 2월 28일부터 만기일(2022년 1월 31일)의 1개월 전일인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됩니다

5)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